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Medi-Cal에 가입하여 Adult Day Health Care (ADHC) 혜택을 받거나 최근에 받은
분들에 해당 가능한 Notice of a Class Action Settlement
(집단 소송 합의관련 공지)입니다.**

본 공지사항은 연방 법원에 의해 인증받은 것으로, 일개 변호사의 호객을 위한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ADHC 서비스 수혜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Medi-Cal ADHC 프로그램 실행을 California에서 종료시켜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 당사자들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본 합의사항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ADHC 프로그램은 2012년 2월 29일자로 종료되고, 2012년 3월 1일부터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역 및 서비스 수혜자 자격 등 자세한 사항 및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합의는 현재 Medicare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귀하의 주요 의료 제공자로부터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본 합의에 따라 가능한 서비스는 귀하가 현재 Medicare를 통해 받고 계시는 서비스에 추가될 것입니다.

본 합의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본 합의의 인증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 공지는 귀하의 권리와 옵션 –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기한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공지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합의 관련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옵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귀하의 소견 없이 본 합의를 평가하며, 다른 소송을 통해 ADHC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ADHC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경우, 본 합의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 공지에 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1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반대	왜 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의 반대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고 싶다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반대의견이 고려되려면 2012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2년 1월 24일 FAIRNESS HEARING에 참석	Fairness Hearing 에서 발언하시려면, 법원에 보내는 서면에 그것을 반드시 언급하십시오. 하지만, 귀하의 반대의견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Fairness Hearing 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 AGREEMENT

(집단 소송 합의 관련 공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1. 왜 내가 이 공지를 받았나요?

귀하는 2011년 7월 1일 이후 Medi-Cal Adult Day Health Care (ADHC)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거나 지금 받고 있어서 본 소송의 클래스 멤버로 간주되어 이 공지를 받으셨습니다.

귀하는 집단 소송건의 제안된 합의사항 및 귀하의 옵션에 대해 법원이 본 합의사항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본 공지는 소송건과 법원이 본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클래스 멤버들이 얻는 것 및 본 협의관련 귀하의 법적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가 담당합니다. 본 건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이라 불리며, 본 건의 번호는 C09-03798 SBA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7명의 ADHC 수혜자이며, 피고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와 해당 부서 Director Toby Douglas입니다. 나머지 모든 ADHC 서비스 수혜자는 클래스 멤버라 불립니다.

2. 이 소송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2009년, Medi-Cal Adult Day Health Care (ADHC) 수혜자들(원고)이 피고가 ADHC 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2011년, 원고는 피고가 ADHC 혜택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DHC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ADHC 서비스 중단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주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3. 왜 집단 소송인가요?

집단 소송에서, 클래스 대표자라고도 불리는 1명 이상의 원고는 비슷한 클레임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비슷한 클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클래스 멤버라고 불리어집니다. 한 법원에서 모든 클래스 멤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본 건의 경우, 원고라 불리는 Esther Darling과 다른 이들이 Medi-Cal ADHC 혜택 수혜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건에 관한 법원의 모든 결정은 모든 클래스 멤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왜 합의를 하나요?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합작으로 ADHC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자인했습니다. 클래스 대표자 및 원고의 변호사들은 본 합의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의를 승인하기 위한 **Fairness Hearing**이 2012년 1월 24일 오후 1시에 **Oakland U.S. District Court**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원 청문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질의 14-17을 참조하십시오.

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 AGREEMENT

(집단 소송 합의 관련 공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5. 내가 본 합의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클래스 멤버이며 본 합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 서약의 유효일 전에 ADHC의 현재 자격 요건 및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부합되거나 부합될; 또는 본 합의가 종료되기 전에 Community Based Adult Services (CBAS)의 현재 자격 요건 및 의학적 필요성 기준에 부합되거나 부합될 사람들을 포함하여 Adult Day Health Care 혜택을 받는, State of California의 모든 Medi-Cal 수혜자들은 Assembly Bill 97 (AB 97) 조항에 의거하여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AB 97에 의해 Medi-Cal ADHC 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또는 2012년 3월 1일 전에 ADHC 수혜 자격이 될 경우 본 합의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 프로그램인 CBAS에 대한 자격을 얻은 분들도 본 합의에 의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AB 97은 Medi-Cal 혜택으로서 ADHC를 제거시킨 새로운 법령입니다.

6. 본 합의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본 합의에 따라 DHCS는 Community Based Adult Services (CBAS)라고 불리는 새로운 Medi-Cal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입니다.

- CBAS로 인해 Medi-Cal 혜택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전문적인 간호와 사회 복지 서비스, 물리 치료, 개인적인 간호, 가족/간병인 교육 및 지원, 식사, 교통 및 사례 관리를 중심가에 위치한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BAS는 DHCS에 의해 CBAS 제공자로 승인 받은 몇몇 이전 ADHC 센터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CBAS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실시될 것입니다.

본 합의는 ADHC의 혜택을 받았으나, CBAS 수혜 자격이 미달된 분들을 위한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정립할 것입니다.

-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격이 있는 분들은 ADHC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HC 서비스는 ADHC 서비스 이용자분들이 ADHC 제공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던 것을 CBAS 제공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변환하거나,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2012년 2월 29일까지 계속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클래스 멤버들은 CBAS 또는 강화된 사례 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위한 소송건이 아닌 바, 원고와 클래스 멤버 중 어느 누구도 본 소송건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 AGREEMENT

(집단 소송 합의 관련 공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7. 본 합의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귀하가 현재 Medi-Cal와 ADHC 둘 다에 가입되어 계신 경우:
 - 귀하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CBAS로부터 자격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귀하의 ADHC 제공자가 평가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 귀하가 CBAS 수혜 자격을 얻은 경우, 2012년 3월 1일 ADHC 서비스가 종료되자마자 CBAS 서비스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 귀하가 CBAS 수혜 비적격자인 경우, 2012년 2월 29일이 ADHC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게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에 따라 필요하신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시도록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 귀하가 현재 Medi-Cal에 가입되어 있으나, ADHC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 2012년 2월 29일까지 ADHC 서비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CBAS 자격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8. 내가 CBAS 가입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하가 Medi-Cal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ADHC 가입 자격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BAS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ursing Facility Level of Care A” (NF-A) 또는 그 이상의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 중간 정도의 또는 심한 Alzheimer’s Disease나 다른 치매 증상을 포함한 중간 정도의 또는 심한 인지 장애인 경우; 또는
- 발달 장애인 경우; 또는
- Alzheimer’s나 치매 등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까지의 인지 장애이면서 목욕, 옷 입기, 음식 먹기, 화장실 이용하기, 걸어다니기, 이동하기, 약물 치료 관리 및 위생문제 중 2가지 증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 만성 정신병 또는 뇌 부상을 입고, 목욕, 옷 입기, 음식 먹기, 화장실 이용하기, 걸어다니기, 이동하기, 약물 치료 관리 및 위생문제 중 2가지 증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에 열거된 증상과 돈 관리, 자원에 접근하기, 식사 준비 및 운송 중 한 가지 증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 AGREEMENT

(집단 소송 합의 관련 공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9. 내가 CBAS 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자로 판정이 된 경우, 자동으로 CBAS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예. 일단 CBAS 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귀하의 거주지에 CBAS 센터가 있는 경우,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귀하의 거주지에 CBAS 센터가 없는 경우, 다른 제공자들로부터 CBAS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012년 3월1일부터 2012년 7월1일 정도 사이 CBAS는 정규 Medi-Cal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CBAS는 Medi-Cal 관리 의료를 통해 대부분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일단 CBAS 서비스가 Medi-Cal 관리 의료를 통해서만 대부분 이용가능하게 되고 나면, 귀하가 Medi-Cal 관리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자격이 주어져 Medi-Cal 관리 의료안에 등록하신 경우, Medi-Cal 관리 의료를 통해서만 CBAS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Medi-Cal 관리 의료에 2012년 7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 또는 Medi-Cal 관리 의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관리 의료 옵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의료안이 CBAS에 지불할 것입니다.
 - Medi-Cal 관리 의료에 등록 가능하나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CBAS가 Medi-Cal 관리 의료를 통해 서비스될 때 CBAS에 등록하여야 CB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Medicare 수혜자인 경우, Medi-Cal 관리 의료에의 등록은 귀하가 Medicare 의사를 선택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Medi-Cal 관리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Medi-Cal 관리 의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계속해서 CBAS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아무 것도 변화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Medi-Cal 혜택으로써 CBAS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다니던 ADHC 센터에서 CB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ADHC 센터가 CBA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DHC 센터는 주 정부에 신청하여 CBAS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CBAS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고 귀하의 ADHC 센터가 2012년 2월 29일까지 CBAS 서비스 제공자로 승인되면, 귀하는 ADHC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같은 센터에서 CBAS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ADHC 센터가 CBAS 서비스 제공자가 되지 않은 경우, 다른 CBAS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 AGREEMENT

(집단 소송 합의 관련 공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11. 내가 CBAS에 비적격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ADHC에 가입되어 있으나 CBAS에 비적격자인 경우,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통해 ADHC가 종료된 후 필요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받는 서비스 및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할 정도로 본 프로그램의 사례 관리자들은 귀하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는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정규 Medi-Cal 서비스로 또는 Medi-Cal 관리 의료를 통해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본 건과 관련한 나의 담당 변호사가 있나요?

예. 클래스 변호인단이라 불리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National Senior Citizens Law Center, National Health Law Program, AARP Foundation Litigation 및 Morrison & Foerster LLP 변호사 사무소는 귀하 및 클래스 멤버를 변호하도록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귀하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 받지 않을 것입니다.

13. 변호사들은 보수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본 합의가 승인되면, 피고는 해당 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 변호사 비용의 액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원고 및 피고는 지난 2-1/2 동안의 변호 비용, \$2.2 백만 달러에 대한 승인을 법원에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2-1/2 동안 본 합의를 모니터하는 데 대한 원고측 변호사 비용 최대 \$400,000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본 합의에 대한 나의 옵션들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면 귀하는 클래스 멤버로 남아 있게 되실 것입니다. 본 합의에 반대하는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2012년 1월 10일까지 보내셔도 됩니다. 2012년 1월 24일 Fairness Hearing 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에 그 내용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청문회에서 발언하실 수 있을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반대의견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2012년 1월 24일 법정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5. 본 합의가 승인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본 합의가 승인되면, 귀하의 상황에 따라 CBAS 혜택을 받게 되거나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California가 Medi-Cal ADHC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 AGREEMENT

(집단 소송 합의 관련 공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16. 내가 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귀하가 클래스 멤버인 경우, 2012년 1월 10일까지 본 합의에 대한 또는 본 합의 중 일부에 대한 반대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이의 여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서면은 직접 작성하시거나 자비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 가능합니다.

반대하시려면, 귀하의 반대의사와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법원에 보내셔야 합니다. 서면의 맨 위에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를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는 귀하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면 원본은 법원서기 앞으로, 그리고 복사본은 양측 변호인에게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십시오. 반대의사가 명기된 서면은 이들 세 곳으로 **2012년 1월 10일까지**의 소인이 찍혀 배달되어야 합니다:

<u>Clerk of the Court:</u>	<u>Attorneys for Class Members:</u>	<u>Attorneys for DHCS:</u>
U.S. District Court 1301 Clay Street Oakland, CA 94612	Elissa Gershon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1330 Broadway, Suite 500, Oakland, CA 94612	Susan M. Carson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455 Golden Gate Avenue, Suite 11000 San Francisco, CA 94102-7004
<u>Reference:</u> <i>Darling et al. v. Douglas et al.</i> , Case No. C09-03798 SBA	ATTN: <i>Darling v. Douglas</i>	

17. 본 합의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언제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법원은 **2012년 1월 24일 오후 1시** Fairness Hearing을 통해 본 합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은 본 합의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 및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판사는 청문회에서 요청한 클래스 멤버들의 발언을 경청할 것입니다. 청문회 발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1301 Clay Street
Courtroom 1, 4th Floor
Oakland, CA 94612

NOTICE OF CLASS ACTION SETTLEMENT AGREEMENT

(집단 소송 합의 관련 공지)

Darling et al. v. Douglas et al., C09-03798 SBA

18.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귀하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클래스 멤버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 합의가 승인되면, 귀하의 상황에 따라 CBAS 혜택을 받게 되거나 강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California가 Medi-Cal ADHC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기

19. 어떻게 하면 본 합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나요?

더 자세한 정보나 본 합의서의 복사본, 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신 경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arling@disabilityrightsca.org	(888) 599-3921
--	----------------

20. 어떻게 하면 본 소송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질의 17에 열거된 주소에 위치한 Clerk of the U.S. District Court 사무실내 비치된 소송 관련 파일을 열람함으로써 본 소송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장소에서 본 합의 전체를 보시거나 다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disabilityrightsca.org/advocacy/Darling-v-Douglas/index.html>
또는
-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ADHC/ADHC.aspx>

21. 다른 언어 또는 장애자를 위한 본 통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다른 언어로 된 본 통지서가 필요하시거나, 장애로 인해 알아볼 수 있는 대체 형태로 작성된 (예를 들어, 점자 또는 큰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가 필요하신 경우, 또는 본 통지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대체 방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수화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 원고의 변호사인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888) 599-3921로 연락하시거나;
또는
- 질의 20에 열거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또는 DHCS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